

## 1. '선교상(본당부문)' 시상 내용

구 분	내 용
1. 명 칭	선교상 (본당상)
2. 주 관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 교구평협이 주관한다.
3. 목 적	교구장의 사목 지침인 '성체와 말씀의 해'의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본당과 지역의 성화와 하느님 나라의 구현에 크게 이바지한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선교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전 교구민에게 선교의식을 고취하는 데 목적을 둔다.
4. 시상구분	수계신자 대비 선교실적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으로 구분한다.
5. 추 천	교구청 통계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후보 본당을 선정한다.
6. 심사위원	<p>가. 심사위원은 교구평협 담당사제의 지도하에 교구평협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p> <p>나. 심사위원장은 교구평협 회장이 된다.</p> <p>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p> <p>라. 회의는 위원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7. 시 상	<p>가. 2023년 회장단·총무 연수 파견미사 중 교구장과 교구평협 회장 명의로 실시한다.</p> <p>나. 부상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p> <p>다. 우수 본당은 상패만 수여한다.</p>
8. 선정기준	<p>가. 2022년도 말 현재 수계신자 대비로 선교실적을 산출한다.</p> <p>나. '가'항의 실적이 같은 경우에는 영세시킨 인원 순위와 비수계신자 비율이 낮은 순위로 선정한다.</p> <p>다. 선교실적과 본당 신자 수는 교구에 보고된 통계자료에 의한다.</p>

## 2. ‘선교상 (개인부문)’ 시상 내용

구 분	내 용
1. 명 칭	선교상 (개인상)
2. 주 관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 교구 평협이 주관한다.
3. 목 적	교구장의 사목 지침인 ‘성체와 말씀의 해’의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본당과 지역의 성화와 하느님 나라의 구현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을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선교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전 교구민에게 선교의식을 고취하는 데 목적을 둔다.
4. 시상구분	영세시킨 실적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으로 구분한다.
5. 추 천	각 본당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한 평신도를 본당 주임신부의 확인을 받아 교구 평협에 보고된 사람을 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세례자 3명 이상만 해당)
6. 심사위원	<p>가. 심사위원은 교구평협 담당사제의 지도하에 교구평협 회장이 위촉하는위원으로 한다.</p> <p>나. 심사위원장은 교구평협 회장이 된다.</p> <p>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p> <p>라. 회의는 위원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7. 시 상	<p>가. 2023년 회장단·총무 연수 파견미사 중 교구장과 교구평협 회장 명의로 실시한다.</p> <p>나. 부상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p> <p>다. 우수 평신도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한다.</p>
8. 선정기준	<p>가.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세를 많이 시킨 순위로 우선 선정한다.</p> <p>나. 영세시킨 숫자가 같을 시에는 예비신자 인도자 수와 합산하여 순위를 선정한다.</p> <p>다. 선교실적은 소정 양식에 따라 본당신부의 확인을 거쳐 교구에 보고된 자료에 의한다.</p>

### 3. ‘선교상 (기관 및 단체부문 - 교구 내 제단체)’ 시상 내용

※ 본당내의 기관 및 제단체는 해당되지 않음

구 분	내 용
1. 명 칭	선교상 (기관 및 단체부문)
2. 주 관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 교구평협이 주관한다.
3. 목 적	교구장의 사목 지침인 ‘성체와 말씀의 해’의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지역의 성화와 하느님 나라의 구현에 크게 이바지한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선교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전 교구민에게 선교의식을 고취하는 데 목적을 둔다.
4. 추천 및 선정내용	가. 교리반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 나. 천주교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안내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 다. 영세 및 쉬는 교우 회두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관 및 단체 라. 지역 복음화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 마. 기타 선교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기관 및 단체
5. 추 천	교구청 자료, 각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6. 심사위원	가. 심사위원은 교구평협 담당 사제의 지도하에 교구평협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나. 심사위원장은 교구평협 회장이 된다. 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라. 회의는 위원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시 상	가. 2023년 회장단·총무 연수 파견미사 중 교구장과 교구평협 회장 명의로 실시한다. 나. 각 기관 및 단체의 활동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시상한다. 다. 우수 기관 및 단체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한다. 라. 부상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 선정기준	가. 2022년도 활동 실적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나. 보고된 각종 실적 자료와 활동의 내용에 대해 심의 선정한다.

#### 4. '평신도 교리교사상 시상' 내용

구 분	내 용
1. 명 칭	평신도 교리교사상
2. 주 관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 교구평협이 주관한다.
3. 목 적	교구장의 사목 지침인 '성체와 말씀의 해'의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본당과 지역의 성화와 하느님 나라의 구현에 크게 이바지한 교리교사를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선교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전 교구민에게 선교의식을 고취하는 데 목적을 둔다.
4. 추 천	가. 각 본당 및 학교, 병원, 교도소 등 제단체에서 교리교사로 봉사한 평신도, 혹은 함께하는 여정 진행봉사자를 본당 주임신부와 제단체 지도신부의 확인을 받아 교구평협에 보고된 사람을 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나. 매년 평신도 교리교사로 봉사한 자를 추천하되 5년 이상 봉사한 자를 추천하며 봉사 기간이 5년, 10년 등 5년 단위 년도에 해당되는 자를 추천한다.
5. 심사위원	가. 심사위원은 교구평협 담당 사제의 지도하에 교구평협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나. 심사위원장은 교구평협 회장이 된다. 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라. 심의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사실유무를 확인함으로써 결정한다.
6. 시 상	가. 2023년 회장단·총무 연수 파견미사 중 교구장과 교구평협 회장 명의로 실시한다. 나. 선정된 교리교사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한다. 다. 부상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 선정기준	가. 선정된 교리교사는 소정 양식에 따라 본당신부의 확인을 거쳐 교구에 보고된 자료에 의한다. 나. 주일학교 교리교사, 노인대학 교사는 제외한다.